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
2. 건명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건요지 : 별첨
4. 검토의견 : 별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희배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조례 안은 2007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외국인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및 그 밖에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함(안 제27조).
- 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4조).
- 다.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총 보상금 최고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3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개정안에 따라 관계법령의 인용조문과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등을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과 우수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외국인학교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조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